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2
----------	-----

발의연월일 : 2016. 5. 30

발 의 자 : 이정식 의원

찬 성 자 : 이백균, 박문수

김명숙, 강선경

유인애, 이용균

김영준

1. 제안이유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근 추가된 복지도우미 업무 등 많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통장의 처우개선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5조의2 외)

나. 인플루엔자 통장 무료 예방접종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나. 예산조치: 필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를 “구성하고”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통장추천심사위원회) ①</p> <p>① 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통장추천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위원회를 구성하고</u> 통장 추천 심사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p> <p>② <u>제1항에 따른 위원회</u>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p> <p>1. 2. (생략)</p> <p>③ (생략)</p> <p>제10조(편의제공) ①·② (생략)</p> <p><u><신 설></u></p> <p>제12조(시행규칙) 이 <u>조례</u>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의2(통장추천심사위원회) ①</p> <p>-----</p> <p>-----</p> <p>-----</p> <p>----- <u>구성하고</u></p> <p>-----</p> <p>-----.</p> <p>② <u>위원회</u>-----</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편의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구청장은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u></p> <p>제12조(시행규칙) --- <u>조례의</u> --</p> <p>-----.</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